민간 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 지원

1 기분	로 현 황
------	-------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☑연례반복
사업위치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(생활보건과)
총사업비	총 (국비) [시비] (보조율) [구비] 500,000천원 500,000천원 0 %
사업내용	○ 자치구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
사업형태	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사업시행주체	자치구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ストリストリ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					V				
	V								
경상	투자								
V	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등을 위한 조례	적정
운영비보조	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등을 위한 조례	ብ ሪ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시민건강국	생활보건과	홍혜숙	김우겸	신귀식
, = = 0 ,	32 2 ,	2133-7660	2133-7676	2133-7670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500,000	(x-) 500,000	(x-) 500,000	(X-)	(X-)
자치단체경상, 조금	(x-) 500,000	(x-) 500,000	(x-) 500,000	(X-)	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	세부 산출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관리운영비 등 지원 820개소*50,810원*12월		=	500,00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도심권 민간건물 화장실의 개방 지속 유지
- 공중화장실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.운영으로 시민편의 제공

□ 사업근거
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(개방화장실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보조금 지급)
-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(관리운영비 등의 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- 사업내용 : 자치구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민간건물에 대한 관리운영비 등 지원
- 사업규모 : 개방화장실 820개소
- 총사업비 : 500,000천원

□ 추진경위

- 2012.1.5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241호)
- 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○ 공중화장실 신축이 어려운 가로변 및 도심권 지역의 민간건물 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 도모

□ 사업추진절차

○ 계획수립 → 지원대상 신청(자치구) → 심사 및 사업비 교부 → 관리운영비 지원(자치구) → 정산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	:	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500,000	
계획수립 및 대상선정	2017.01		
지원대상 심사 및 보조금 교부	2017.02	500,000	월별 자치구 교부
관리운영비 지원	2017.02		
정산	2018.01		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○ 민간개방화장실 25개 자치구 777개소 지원
2015년도	○ 민간개방화장실 25개 자치구 787개소 지원
2016년도	○ 민간개방화장실 25개 자치구 820개소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공중화장실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 민간건물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시민편의 증진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-) 500,000	(x-) 0	(x-) 0	(x-) 500,000	(x-) 499,740	(_X -)	(x-) 260
2014	(x-) 500,000	(x-) 0	(x-) 0	(x-) 500,000	(_X -) 499,944	(_X -)	(_X -) 56
2015	(x-) 500,000	(x-)	(x-)	(x-) 500,000	(x-) 499,944	(x-)	(x-) 56